

호명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

호명면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,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. 4. 20.

호 명 면



1. 설치목적 : 호명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
2. 설치장소 : 1개소
3. 공고방법 : 예천군 홈페이지
4. 행정예고기간 : 2021. 4. 20 ~ 2021. 5. 9.(20일간)
5. 설치예정지

연번	주 소	대수	비고
1	예천군 호명면 형호리 250	1	

6. 관련근거법규

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·제한)

나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)

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라.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7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과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연락처 등

다. 의견 제출기간 : 2021. 04. 20. ~ 2021. 05. 09.(20일간)

라. 문의 및 의견제출

1) 우편 -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

2) 전화 - 054-650-8594

3) 팩스 - 054-650-6687

마. 기타사항 :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